

예 산 총 칙

201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08,000,000	15,240,000
일반회계		427,000,000	12,810,000
특별회계		81,000,000	2,430,000
공기업특별회계		23,000,000	690,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000,000	390,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00,000	300,000
	기타특별회계	58,000,000	1,740,000
	수질개선특별회계	3,000,000	90,00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135,000	64,05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660,000	19,80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2,150,000	64,500
	주택사업특별회계	740,000	22,20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300,000	9,000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400,000	42,000
	치수사업특별회계	2,940,000	88,20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3,100,000	93,000
	대지보상특별회계	800,000	24,00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35,000	1,05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0,740,000	1,222,2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42,89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